

# 2017년도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광주광역시교육감

## 1. 채용예정인원 및 응시 자격

가. 채용예정인원 및 1차 시험

구분	직종	채용예정인원	1차합격예정인원	응시 자격(면허증, 자격증) 필요 여부	1차 시험	
필기시험 실시직종	영양사	2	3	○	필기시험 (국어, 일반상식)	
	조리사	26	32	○		
	교육업무사	교무실무사	6	8		×
		과학실무사	3	4		×
		사서	3	4		○
	특수교육실무사	11	14	×		
	교육복지사(나호)	1	2	○		
	돌봄전담사(주 40시간 근무)	5	6	○		
	시간제 돌봄전담사(주 25시간 근무)	134	161	○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2	3	○		
소 계	193	237				
필기시험 미 실시 직종 (서류전형)	조리원	105	126	×	서류전형	
	특수학교(급) 통학차량실무사	3	4	×		
	소 계	108	130			
<b>합 계</b>		<b>301</b>	<b>367</b>			

※ 1차 시험 합격예정인원은 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의 120%(소수점 이하 인원은 절상)이며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교육공무직원 신분 :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 교육공무직원 역할 :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각급 학교(기관)에서 공적 업무 수행

나. 직종별 업무내용 및 응시 자격

직 종		업무내용	응시 자격(면허증, 자격증)	비 고
영양사		-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식생활지도·정보 제공 및 영양 상담, 조리실 종사자 지도·감독 등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조리사		- 급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및 조리업무, 식품 검수 지원, 급식 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등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	
교육 업무사	교무 실무사	- 공문처리, 정보공시 업무지원, 교원명부 작성, 학교행사 지원, 교무행정관리 교육통계, 인증서 발급 및 나이스권한 부여, 지출품의 등	불필요	
	과학 실무사	- 과학교육 기안 및 공문처리, 과학실험실관리 및 안전점검, 과학실험재료 및 교구준비, 실험실 폐수 관리, 지출품의 등	불필요	
	사 서	- 도서관 운영·관리 등	1, 2급 정사서 또는 준사서 자격증 소지자	
특수교육 실무사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활동(교수·학습활동, 교내외 활동, 급식, 등·하교, 신변처리 등)에 대한 보조 등	불필요	
교육복지사 (나호)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생 관리(학교생활 적응 지원,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관한 교육 등),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활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지원 등	초·중등 교원자격증,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직 종	업무내용	응시 자격(면허증, 자격증)	비 고
돌봄전담사	- 돌봄교실(단위학교 전체운영교실) 운영·관리(연간 운영 계획 수립, 급·간식 계획 수립, 학생 출결 및 귀가관리, 시설·안전관리, 나이스프로그램 운영 관리, 예산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등)	유·초·중등 교원자격증 또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시간제 돌봄전담사	- 담당 돌봄교실 운영·관리(연간 운영 계획 수립, 급·간식 계획 수립, 학생 출결 및 귀가관리, 시설·안전관리, 나이스프로그램 운영 관리, 예산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등)	유·초·중등 교원자격증 또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각종 상담 업무, 단위학교 Wee프로젝트 관련 업무 등	전문상담교사, 상담심리사(사단법인 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임상심리사(한국산업인력공단), 정신보건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조리원	- 급식품의 위생적인 조리 및 배식업무, 식생활관 위생관리 업무, 급식시설·설비 및 기구의 세척·소독 등	불필요	
특수학교(급) 통학차량 실무사	- 특수교육대상자 승·하차 보조, 통학차량 이용 학생 안전관리, 통학차량 운행·관리 지원 등	불필요	
전 직종 (공통)	- 명시된 업무 이외에 학교(기관)장이 분장하는 업무		

## 2. 평가방법

- 가. 필기시험 실시 직종은 1차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2차 면접 시험을 실시합니다. 필기시험은 국어와 일반상식 과목이 25문제씩 객관식 4지 택1형으로 출제되고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 나. 필기시험 미실시 직종은 1차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 서류전형 채점 기준 >

#### ○ 조리원

- 응시자에 대한 평가는 『기본 점수 30점 + 경력 점수 30점 + 자격증 점수 40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함.
- 기본 점수: 연령·주소지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는 기본 점수 30점 부여
- 경력 점수: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학교(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 조리원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 (단시간근로자 경력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

해당직종	교육공무직원 경력기간	점 수	경력인정범위
조리원	5년 이상	30점	·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 조리원으로 근무한 총 1개월 이상 경력. 단, 시험 공고일(2017. 4. 19.) 전일(前日)까지 근무한 경력만 인정 ※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기관)라 함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공립 단설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학력인정 각종학교, 교육행정기관을 말함.
	4년 이상 ~ 5년 미만	25점	
	3년 이상 ~ 4년 미만	20점	
	2년 이상 ~ 3년 미만	15점	
	1년 이상 ~ 2년 미만	10점	
	1개월 이상 ~ 1년 미만	5점	
	1개월 미만	0점	

#### · 자격증 점수

해당직종	자 격 증	점수
조리원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조리기능사 자격증 4개 취득	40점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조리기능사 자격증 중 3개 취득	30점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조리기능사 자격증 중 2개 취득	20점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조리기능사 자격증 중 1개 취득	10점
	자격증 없음	0점

## < 서류전형 채점 기준 >

### ○ 특수학교(급) 통학차량실무사

- 응시자에 대한 평가는 『기본 점수 30점 + 경력 점수 30점 + 자격증 점수 40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함.
- 기본 점수: 연령·주소지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는 기본 점수 30점 부여
- 경력 점수: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학교(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 특수학교(급) 통학차량실무사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 (단시간근로자 경력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

해당직종	교육공무직원 경력기간	점 수	경력인정범위
특수학교(급) 통학차량 실무사	5년 이상	30점	·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 특수학교(급) 통학차량실무사로 근무한 총 1개월 이상 경력. 단, 시험 공고일(2017. 4. 19.) 전일(前日)까지 근무한 경력만 인정 ※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기관)라 함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공립 단설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학력인정 각종학교, 교육행정기관을 말함.
	4년 이상 ~ 5년 미만	25점	
	3년 이상 ~ 4년 미만	20점	
	2년 이상 ~ 3년 미만	15점	
	1년 이상 ~ 2년 미만	10점	
	1개월 이상 ~ 1년 미만	5점	
	1개월 미만	0점	

- 자격증 점수

해당직종	자 격 증	점수
특수학교(급) 통학차량실무사	사회복지사 1급 또는 수화통역사	40점
	사회복지사 2급	20점
	자격증 없음	0점

### 3. 일반 응시 자격

가. 응시연령은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단, 군복무자는 최종 합격일까지 전역 예정이거나, 소집해제 예정인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 시험 공고일(2017. 4. 19.) 전일(前日)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다. 직종별 응시 자격이 필요한 경우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자격증·면허증 소지자에 한하며, 다만 **필기시험(2017. 6. 17.) 시행 전일(前日)까지** 자격증·면허증 등의 취득이 확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일 이후 취득한 응시 자격 증명서(면허증, 자격증)는 2017. 6. 14.(수) ~ 2017. 6. 16.(금) 09:00 ~ 18:00까지 재정지원과 교육공무직원 지원팀에 제출하여야 1차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라. 응시 결격 사유

○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3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58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제13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 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민법 부칙 <법률 제10429호, 2011.3.7.>]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한 자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58조(정년)** ①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9월 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3월 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4. 시험시행 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서류전형일 (시험시간)	합격자 발표	비고
1차	필기시험	2017. 5. 23.(화)	2017. 6. 17.(토) (11:00 ~ 11:50)	2017. 6. 27.(화) <u>필기시험 미 실시 직종에 한함.</u>
	서류전형	해당없음	2017. 6. 19.(일)	
2차	면접시험	2017. 6. 27.(화)	2017. 7. 22.(토) (09:00 ~ 18:00)	2017. 7. 26.(수)

※ 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알림마당 - 시험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5. 응시원서 배부 및 접수

##### 가. 응시원서 접수

1) 접수대상 : 전 직종(**필기시험 미 실시 직종도 반드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접수기간 및 시간 : 2017. 5. 15.(월) ~ 5. 17.(수) 09:00 ~ 18:00**

3) **접수처 : 광주광역시교육청(별관 1층) 원서 접수처**

4) 응시원서 작성

- 응시자는 원서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는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고문에서 응시원서 **【붙임 1】**를 다운받아 컴퓨터나 자필로 작성한 후 응시자가 서명하여 본인이 제출하거나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

5) 접수방법

- 본인(신분증 지참) 또는 대리접수자(대리접수자 신분증, 위임장 **【붙임 2】** 지참)가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6) 유의사항

- 응시자는 하나의 직종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후에는 응시직종을 변경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수수료는 면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다. 접수 관련 문의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과 교육공무직원 지원팀 (☎ 062)380-4167~4168, 4177)

##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 [공통]

제출서류명	제출부수	제출대상 및 세부내용	비고
응시원서 【붙임 1】	1부	응시자 전원	
칼라 사진	3매	응시자 전원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 원판의 것으로서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않는 얼굴 정면(상반신) 사진(3.5cm×4.5cm)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 응시원서 서식에 사진파일(3.5cm×4.5cm, JPG형식, 해상도 100dpi, 칼라증명사진) 을 삽입하여 인쇄한 경우나 사진을 종이에 인쇄하여 응시원서에 부착한 경우도 인정하며, 그러한 경우 칼라 사진 3매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3】	1부	응시자 전원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필기시험(2017. 6. 17.) 시행 전일(前日)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필기시험 직중]

제출서류명	제출부수	제출대상 및 세부내용	비고
응시 자격 증명서 (면허증, 자격증 등)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필기시험(2017. 6. 17.) 시행 전일(前日)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일 이후 해당 요건을 갖춘 응시 자격 증명서(면허증, 자격증)와 가산특전 증명서(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대상자, 자격증)는 2017. 6. 14.(수) ~ 6. 16.(금) 09:00 ~ 18:00 기간 내에 재정지원과 교육공무직원 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전형 직종]

제출서류명	제출부수	제출대상 및 세부내용	비고
경력증명서 【붙임 4】	1부	해당자에 한함. (4 ~ 5쪽 참조) ※ 공고문의 【붙임 4】 서식으로 각급 학교(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 5쪽 참조)	

나.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채용서류)

제출서류명	제출부수	용도	제출기한
주민등록표초본 ※ 최종(면접)시험일 이후 발급분으로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주민등록상 주소 이력 확인	2017. 7. 27.(목) ~ 8. 2.(수) 09:00 ~ 18:00 ※ 재정지원과 교육공무직원 지원팀으로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붙임 5】	1부	채용결격사유 확인	
면허증, 자격증 원본	1부	진위 여부 확인 후 반환	
기본증명서	1부	채용서류	
채용신체검사서(일반)	1부	채용서류	
칼라 사진 (3.5cm×4.5cm)	2부	채용서류	

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전역 예정자는 소속 부대장 발행의 전역예정증명서를, 소집해제 예정자는 복무기관장의 복무확인서를 재정지원과 교육공무직원 지원 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시험(필기시험 및 서류전형 · 면접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가.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 필기시험의 경우 과목별로 각각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서류전형의 경우 기본 점수, 경력 점수, 자격증 점수의 득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면접시험의 경우 면접위원별 득점을 평균하여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단, 취업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직종별 채용예정 인원이 4명 이상 시 적용함.

-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으로 응시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 나. 의사상자 등 대상자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상자와 그의 가족은

- 필기시험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 서류전형의 경우 기본 점수, 경력 점수, 자격증 점수의 득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면접시험의 경우 면접위원별 득점을 평균하여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단,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직종별 채용예정 인원이 10명 이상 시 적용함.

※ 본인의 의사상자 등 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응시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의사상자 등 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가산점 적용함.

####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의 경우에 한함)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과목별로 각각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 또는 0.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자 격 증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응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3급 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되며,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합니다.

####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2017. 6. 17.) 시행 전일(前日)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응시원서의 가산점 표기란에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비율(10% 또는 5%), 의사상자 등 대상자의 가산비율(5% 또는 3%),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의 가산비율(1% 또는 0.5%)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잘못된 기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필기시험 시 해당 시험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사람은 위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점, 자격증 가산점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8. 시험의 합격결정

### 가. 1차 시험

- 1) 필기시험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20%를 합격자로 결정
- 2) 서류전형 : 서류전형 평가항목의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중에서 채용예정인원의 120%를 합격자로 결정
- 3) 동점자 발생 시 1차 시험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도 모두 합격 처리

### 나. 2차 면접시험

- 1) 2차 면접시험의 평가 성적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최종 합격자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허위 또는 위조의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2) 동점자 처리 : 2차 면접시험 동점자는 다음 순위에 따라 합격 처리

- ① 취업지원대상자
- ② 전체 항목에서 탁월을 많이 받은 사람
- ③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 《합격자 공고 후 채용 포기 등 결원 발생 시 처리》

·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 준용

## 9. 최종 합격자의 처우

가. 최종 합격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각급 학교(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며, 보수 등 처우는 매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을 적용하게 됩니다.

## 10. 채용절차

가. 직종별 결원 발생시 직종별 성적순에 따라 인사발령 합니다.

나. 신규 채용자는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신규 채용자는 무기계약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 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합니다.

##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붙임 6】** 및 반환용 우표를 첨부한 반환봉투 제출),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다.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면허증·자격증·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 검증,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1차 필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은 『2017년도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 제1차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 안내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직원 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062)380-4167~4168, 4177)

【붙임 1】

# 응시원서(원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시행 2017년도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합격 결정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성명 (서명)

① 주 소					
②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③ 응시직종		④ 성 명	(한글)	⑦ 사 진 (3.5cm×4.5cm)	
			(한자)		
※ 응시번호		⑤ 생년월일			
		⑥ 성별			
⑧ 가산점 표기란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대상자	보훈(의사상자증서)번호		가산비율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종목(급수)	가산비율

간  
인

⑨ 응시직종		<b>응시원서(부분)</b> 2017년도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우무인 (원서 제출시 에는 찍지 말것)	⑫ 사 진 (3.5cm×4.5cm)
		⑩ 성 명	(한글) (한자)		
※ 응시번호		⑪ 생년월일			

간  
인

⑬ 응시직종		<b>응 시 표</b> 2017년도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⑬ 사 진 (3.5cm×4.5cm)
		⑭ 성 명		
		⑮ 생년월일		
※ 응시번호		2017년 월 일 광주광역시교육감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자필이나 컴퓨터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가. 응시자 성명 ④·⑩·⑭… 정자로 기재하되, ④·⑩는 한글과 한자로 기재할 것

나. 주소 ①… 주민등록상 주소(도로명 주소)를 기재할 것

다. 연락처 ②… 연락 가능한 자택 전화 또는 휴대폰 번호를 기재할 것

라. 응시번호란…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 표란은 기재하지 말 것

마. 사진란 ⑦·⑫·⑯… 3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것으로서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않는 얼굴 정면(상반신) 사진(3.5cm×4.5cm)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 단, 응시원서 서식에 사진파일(3.5cm×4.5cm, JPG형식, 해상도 100dpi, 칼라증명사진)을 삽입하여 인쇄한 경우나 사진을 종이에 인쇄하여 응시원서에 부착한 경우도 인정함.

바. 가산점표기란 ⑧…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의 보훈번호 및 가산비율(10% 또는 5%) 기재, 의사상자증서의 증서번호 및 가산비율(5% 또는 3%) 기재,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의 자격번호, 종목(급수), 가산비율(1% 또는 0.5%) 기재할 것

사. 우무인란… 시험 시행일에 신분증을 미지참한 응시자에게 우무인(오른손 엄지손가락 도장)을 받을 계획이므로 응시원서 제출 시에는 찍지 말 것





【붙임 4】

## 경력 증명서

□ 발급번호 : (연도) - (일련번호)

인적사항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근무사항	④근무기간		⑤근무부서	⑥교육공무직원 직종명	⑦비고 (주 소정근로시간 표시: 예를 들면 주 40시간, 주 15시간 등)
	부터	까지			
<p>※ 발급 시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 공고일(2017. 4. 19.) 전일(前日)까지 근무한 경력만 인정</li> <li>- 단시간근로자 경력도 통상 근로자(주 40시간)와 동일하게 인정</li> </ul>					
⑧ 총근무 기간	년	월	⑨ 퇴직당시의근로자 구분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⑩ 퇴직 사유					
⑪ 용도	2017년도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 서류 제출용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7. . .

○○○ 학교(기관)장

【붙임 5】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범죄경력 유무 조회	범죄경력(유무) 조회	

2. 이용기관의 명칭 : 광주광역시교육청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7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6】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17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